

[2023년도]

초·중학교의 취학지원제도 안내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오사카시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학생의 학습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취학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립의 초·중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지원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해주십시오.

1 신청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이유 | 증명서류 |
|--|--|
| ○ 2022년도 혹은 2023년도의 시민세가 비과세이다. | 「시민세·부민세 특별징수세액의 결정·변경통지서」 (근무처에서 교부)의 복사본 「시민세·부민세증명서」(시세사무소·구청에서 발급) (원본이 필요합니다.) ※ <u>세금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실 경우, 상기증명서류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023년도 비과세인 분에 한합니다.)</u> |
| ○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징수유예를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료(변경)결정통지서」(자택에 송부) 의 복사본 |
| ○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다. (특별아동부양수당, 아동수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동부양수당증서」(구청보건복지센터에서 교부) 의 복사본 |
| ○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 증명서류의 제출 불필요 |
| ○ 2022년도 또는 2023년도에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되었다. | 「보호정지(또는 폐지) 결정에 대해서」(자택에 송부) 의 복사본 |

| | |
|---|--|
| <p>○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인 전원 (단, 200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는 제외) 의 전년도 소득 합계액이 교육위원회가 세대인원수와 주택소유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소득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 소득 기준액에 대해서는 다음 「4 소득기준액에 대하여」를 참조)</p> | <p>「시민세·부민세 특별징수세액의 결정·변경통지서」 (근무처에서 교부)의 복사본 「시민세·부민세증명서」(시세사무소·구청에서 발급) (원본이 필요합니다.) 「시민세·부민세납세통지서 겸 세액결정(충당)통지서 및 과세명세서」(자택에 송부)의 복사본 ※ 세금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실 경우, 상기증명서류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p> |
|---|--|

※ 신청에 소요되는 시민 여러분의 부담의 경감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 거주자인 분(2023년 1월 1일 현재)에 대해서는 신청자 및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오사카시의 개인 시민세과세 대장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정보의 제공은 해당년도(2023년도)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년도의 시민세가 비과세라는 사유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2005년 4월 2일 이전 출생자, 세대주의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으로 신고된 분은 제외)의 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세금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학교 교재비 ◇ 학교 급식비 ◇ 소풍 등 특별활동비 ◇ 수학여행비
◇ 입학준비 보조금 ◇ 의료비 ◇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 공제적립금(보호자부담분)

○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는 병은, 학교의 정기건강진단 등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병에 대해서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의료권을 발급하므로 반드시 진찰을 받기 전에 학교에 신청해주세요.

※ 병명 : 충치, 만성축농증, 중이염, 결막염, 기생충병, 아데노이드, 백선, 옴, 농가진, 트라코마

○ 생활보호(교육보조)을 받고 있는 분은 지원 내용 중, 수학여행비, 의료비,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 진흥센터 공제적립금(보호자부담분)이 지원대상입니다.

3 신청방법

○ 아동·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신청용지를 받아주십시오.

○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학교마다 1장씩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기한은 3월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세금정보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입니다. (새로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 또는 중학교 1학년생에만 한하여 입학 전년도 12월부터 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도의 도중에도 신청이 가능하오나, 학교교재비 등은 인정일 이후에 구입한 것과 실시한

행사비용이 대상이며, 급식비는 인정일 이후의 분이 대상이며, 실비액이 지원됩니다. 인정일 이후의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소득기준액에 대하여

- 세대전원의 2022 년의 합계소득금액이 시가 정한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이 인정되거나, 2023 년도의 소득기준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결정되어지는 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소득에 따른 심사에 있어서 「소득금액」은 급여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10 만엔을 공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참고) 【2022 년도의 소득기준액】

| 세대인수 |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7 인 |
|-----------|------|--------|--------|--------|--------|--------|--------|
| 주택의 형태 | 임대주택 | 226 만엔 | 260 만엔 | 318 만엔 | 353 만엔 | 394 만엔 | 465 만엔 |
| | 자가주택 | 162 만엔 | 195 만엔 | 253 만엔 | 288 만엔 | 329 만엔 | 389 만엔 |

※2023 년도 소득기준액은 2023 년 4 월 1 일 이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ity.osaka.lg.jp/kyoiku/page/0000495254.html>) 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 상담해 주십시오.